

## 아동학대의 눈으로 본 체벌과 학생인권

일시 : 2014년 12월 9일 (화) 오후 5~7시

장소 : 서울 서대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주최 : 인권친화적학교+너머 운동본부

가정과 학교 등에서 청소년, 학생에 대한 체벌 등의 폭력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관련 사건들도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한편, 최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제도적인 변화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동학대 관련 제도나 개념 등을 통해서 학교에서의 체벌을 포함하여 학생인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볼 수 있을지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동학대 관련 제도 등의 부족한 점, 청소년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점 등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 진행순서

17:00 ~ 17:05	여는 말
<b>1부 발제</b>	
17:05 ~ 17:30	학대와 체벌 사이, 개념과 사례 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17:30 ~ 17:55	아동학대 관련 법 및 학교 체벌 등 관련 법률의 의미와 해석 가능성 검토 김병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b>2부 토론</b>	
18:00 ~ 18:30	준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고등학생)
	이기규 (인권배움터 봄, 초당초 교사)
	김은정 (세이브더칠드런 국내옹호팀장)
	성태숙 (구로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
18:30 ~ 19:00	자유토론

**목차**

**학대와 체벌 사이의 관계**  
 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3p

---

**학교 체벌과 학대에 대하여**  
 김병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6p

---

**교육적 벌이라는 인식에서 폭력이라는 인식으로**  
 준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고등학생) 15p

---

**아동학대, 체벌 그리고 학생 인권**  
 이기규 (인권배움터 봄, 초당초 교사) 17p

---

**토론문**  
 김은정 (세이브더칠드런 국내옹호팀장) 19p

---

**가정 등에서의 아동학대와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폭력과의 연관성**  
 성태숙 (구로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 21p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전문** 26p

---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관련 조항** 40p

---

## 학대와 체벌 사이의 관계

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몇 년 전, 대구에서 교사가 학생을 매로 200대를 때려서 세상에 알려진 사건이 있었다. 그때 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한 청소년 활동가가 든 피켓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200대를 때려야만 폭력인가? 단 1대라도 폭력이다!”

바로 올해, 서울에서 고등학생이 ‘앉았다 일어났다’ 체벌을 800회 당하고 근육이 파열되는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을 보며 나는 내가 고등학교에서, 등굣길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200번이 넘게 해야 했던 일이 떠올랐다. 요즘도 만나는 청소년들에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몇십 번씩 했다는 이야기를 드물지 않게 듣게 된다. ‘앉았다 일어났다’는 800번을 시켜야만, 근육이 파열되어야만 폭력인가? 나는 앉았다 일어났다를 200번 넘게 하고 2주 정도는 계단도 제대로 못 오르내렸지만 그걸 시킨 교사는 아무 문제도 없었다. 1대를 때리는 체벌은 폭력인가? ‘앉았다 일어났다’는 몇 회부터 폭력이 되는가? 어느 정도부터가 폭력인가?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다. “어느 정도부터 학대인가?” 뺨을 철썩 때리면 학대이고, 손바닥을 회초리로 때리면 학대가 아닌가? 이에 대한 정부나 법원의 입장은 애매하다. 각종 체벌이나 학대 사건들에 대한 판례 역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가”를 언급하면서 애매모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체벌’은 ‘신체적 고통을 주는 벌’로 정의된다. 조금 더 넓은 국제 기준을 가져온다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벌에 더해서 모욕적이고 비인간적인 처벌까지도 체벌에 포함된다. 예컨대 나는 중학교 때 쓰레기통에 물을 받아와서 학생에게 끼얹는 벌을 가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은 직접적 통증을 주지 않더라도 모욕적이고 비인간적인 체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대’는 사전적으로는 ‘괴롭히고 가혹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정의되는데, 법적으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sup>1)</sup>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모든 체벌을 학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 그럴 의지도 없는 것 같다. 학교 체벌의 경우에도 ‘직접체벌’(구타형), ‘간접체벌’(얼차려형)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며 체벌을 존속시키려고 하고 있는데다가, 그나마 금지한다고 한 구타형 체벌도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허용한다는 ‘간접체벌’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명백한 가혹행위로 폭행 아닌 학대의 유형에 잘 들어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말이다. 가정 체벌에 관해서 경찰은 언론을 통해 “모든 체벌을 학대라고 보기는 힘들어 그 정도와 지속성 등을 토대로 단순한 친권 행사인지, 아동 학대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sup>2)</sup>라고 모든 체벌이 학대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 체벌과 학대 사이에 질적 차이가 있는가?

여러 사례들을 확인해봤으나, 체벌과 학대의 구분선은 흐릿하기만 하다. 체벌 중에서도 ‘(내가/경찰이/검사가/판사가) 보기에 좀 심한 것’은 학대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학대가 아니라는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도 한국 사회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든 체벌이 학대라는 규정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어디부터가 학대인지 묻는다면 그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리라. 오히려 그들이 제시하는 기준은 행위의 내용보다는 가해자의 의도이다. “아이를 위해서 한 것은 교육적 체벌이고, 아이를 괴롭히거나 악의를 가지고 한 것은 학대이다.”라는 식으로 그러나 학대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것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행위의 내용이고 피해자의 경험이 되어야 마땅하다.

체벌 경험이 아이-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학대 경험이 아이-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두 결과 사이에는 유사한 점이 많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아동학대 경험이 있는 아이-청소년은 더 높은 공격성과 더 낮은 감정이입 능력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에서 신체적 학대 경험자로 분류된 상당수는 ‘종아리, 엉덩이 등을 맞음’, ‘빗자루로 맞음’ 등 학대로

1) 아동복지법 제3조

2) 연합뉴스, 「'부모님이 때려요'...부모 체벌에 자녀신고 잇따라」. 2014.10.18. 최재훈 기자.

잘 생각되지 않을 일상적 체벌을 경험한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sup>3)</sup> 다른 연구들에서도 부모로부터 신체적 학대 경험과, 공격성, 자기통제력 등이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sup>4)</sup>

체벌 경험에 대해 연구에 따르면, 학교 체벌은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sup>5)</sup> “폭력에 우호적 태도 및 공격성 강화는 바로 체벌로 인한 부정적 산물(영향)이다.” 체벌경험과 공격성, 부정적인 자아정체성 등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고, 체벌을 처음 경험한 연령이 낮을수록 폭력선호도와 공격성, 스스로를 ‘문제아’로 인식하는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나서 체벌경험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자존감을 약화시키고 공격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체벌과 학대는 정도의 차이가 보일 뿐, 동일한 범주에 있다. 또한 체벌과 학대를 구별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체벌의 사용이나 체벌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아동학대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역시 존재해서, 체벌이 곧 학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sup>6)</sup> 정서적 후유증이나 신체적 증상, 스트레스 등 역시 체벌 경험과 학대 경험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체벌이 학대와 구별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한 정리가 아닐까? “체벌은 학대의 한 유형이며 사회통념상 허용되어온 체벌이란 약한 수준의 학대”라고 폭행과 구타이든, 폭행 아닌 가혹행위이든,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것을 징계 수단으로 삼는 체벌은, 아이-청소년의 존엄성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학대의 일종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다.

### 벌의 가능성과 한계

법적으로 볼 때도 그러하다.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은 아동학대 중에서 형법상 폭행, 상해, 학대, 유기, 감금, 모욕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아동학대범죄’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sup>7)</sup> 형법상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규정되므로, 논리적으로 구타형의 체벌은 모두 폭행죄에 해당하며, 아동학대범죄에 들어간다. 또한 형법상 학대는 폭행 외의 가혹행위를 이르는데, 이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일차려형의 체벌이나 모욕적이고 비인격적인 행위 전반에 적용해볼 수 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의 국제인권규범들 역시 체벌을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상황에서의 체벌의 전면 금지를 반복해서 권고하고 있다. 위원회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벌’ 뿐만 아니라 모욕적이고 비인격적인 대우 자체를 폭 넓게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9년, 유엔의 고문 등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에 있는, 주로 고문 금지에 적용되어 오던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대해 훈육 수단으로서의 체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체벌은 필요하거나 심지어 올바른 것이라는 생각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질적으로 다르지 않은데 체벌은 올바른 것이고 학대는 나쁜 것이라는 식이므로, 대처에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체벌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에 대해 망설임과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 피해자인 아이-청소년은 부모나 교사 등을 경찰에 신고했을 때 특별히 큰 피해를 입증할 수 없다면 주변으로부터 쉽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며, 심한 경우에는 ‘패륜적이라는 비난을 감수해야만 한다. 최근 기사를 살펴보다가 내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반응 중 하나는 부모의 체벌을 경찰에 신고한 아이-청소년에 대해 “저런 애한테 매가 약이다.”라는 식의 댓글들이 우르르 달리는 모습이였다. 학교 교사 등, 아동학대를 인지했을 때의 신고의무자들 역시 부모의 아동학대를 신고했다가 혹시 ‘가정파괴자’라는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서 신고를 망설이게 된다. 이처럼 폭력에 관대하고 보호자-아동, 교사-학생 사이의 폭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요청하는 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자세 자체가 아동학대를 유지시키는 사회적 배경이다.

현재 체벌이라고 하면 주로 학교에서의 체벌 문제가 거론이 되는 편이고,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에서, 보호자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올해 9월 말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역시 주로 가정에서 보호자에 일어난 학대치사 사건들 때

3) 최윤라 외, 「학대받은 아동의 공격성과 감정이입에 관한 연구」(1989)

4) 조유정 외,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자기통제성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2005)

이호택,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검증 (2012)

5) 도기봉 외, 「청소년이 지각하는 교사의 체벌행동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2014)

6) 김은경, 「체벌의 실태와 영향에 관한 연구 : 학교 체벌을 중심으로」(1999)

정준미 외, 「부모의 아동기 폭력 경험과 자녀 체벌과의 관계모형」(2000)

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문에 입법이 되었다. 그러나 이미 아동학대 관련 법들은 학교나 학원 등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까지 적용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흡연을 이유로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체벌과 모욕을 받은 중학생이 자살하자 경찰에서 가해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다. 10월에도 영어 유치원 형태의 학원에서 아이를 방에 가둬두거나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해온 것이 아동학대죄를 적용받아 입건되었다. 또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왕따를 조장하고 종용한 담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문제는 체벌이나 학교에서의 학생인권 침해 등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적용이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사회적으로 알려지고 이슈가 된 사건이나, 피해자의 나이가 적고 보기에 정도가 심한 사건들 등, 극단적인 사례들이 주로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받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의 개념 자체가 포괄적이면서도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며, 관련 법이 주로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를 상정하고 짜여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적용은 문제가 된 특정 사건들을 엄벌하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법을 적용하는 양상을 띠게 되기 때문에 아동학대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예방하는 효과는 약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학교와 가정을 포함하여 모든 체벌을 학대에 포함시키고 금지하며, 인권침해 사건들을 학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개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다시피, 현재 대한민국 정부와 법원은 모든 체벌을 학대로 포함해서 보지 않고 있다. ‘사회통념상’ 체벌이 허용되고 있다는 해석 때문이고, 달리 말하면 정부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 적용되는 아동학대 개념에도 상당히 불분명한 면이 있는데, 이는 아동학대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합의된 기준과 개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일 것이다. ‘아동학대’의 범위를 넓히고 그 적용을 확실히 하는 것도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다.

### ‘정상적인 발달’은 어디까지인가?

모든 인권침해가 그렇겠지만, 아동학대 역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아동학대 관련 제도들은 가해자를 모두 형사 처벌하기 보다는 보호조치나 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장치를 두어서 재발방지와 치료, 그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손바닥 한 대 때려도 아동학대로 감옥에 가야 한단 말이나?”라는 식으로 묻기보다는, 손바닥 한 대를 때리는 것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으며 따라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학대 개념에 모든 체벌이 포함되어, 금지 대상이 되어야 한다.

현재 체벌의 정당성이나 아동학대 여부를 가리는 데 자주 언급되는 ‘사회통념’은 실제와 기준도 불분명하지만, 아동학대 여부를 논할 때 사회통념이 근거로 인용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아동학대 문제는 정말 그것을 경험한 아이-청소년의 입장에서 고려를 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폭력을 용인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것은 결국 가해자 중심적인 논리일 수밖에 없다. 아동학대는 아이-청소년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규정되고 있다. 그런데 이 ‘정상적 발달’이라는 것이 단지 아이-청소년이 눈에 띄는 상해나 질병 없이 자라는 것만을 의미하는가? 폭력을 경험하고 폭력에 우호적인 성격이나 공격성을 가지게 되거나, 차별과 폭력을 내면화하게 되거나, 인격의 존엄성을 짓밟히는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 발달’을 저해당하고 왜곡당하는 것 아닌가? 아이-청소년이 자유로운 정신과 인간에 대한 존중의 경험을 가지고 성장하게 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관점에서 ‘정상적 발달’이란 개념을 구성할 필요가 있고, 이에 근거해서 ‘아동학대’ 개념을 더 적극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

통계에 의하면 여전히 청소년들이 체벌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장소는 학교이다. 이는 대규모로 학생들을 모아놓는 학교의 특성과, 여전히 학교에서의 체벌도 암묵적으로 용인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학교에서의 체벌도 아동학대의 개념을 적용해서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학교에까지 아동학대 관련 법을 적용하게 되면, 체벌 외의 각종 학교에서의 가혹행위나 일부 학생인권 침해 사건들까지 아동학대로 보고 대응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이미 교사가 ‘왕따’를 조장하고 종용한 행위가 정신적인 학대라고 기소된 사례가 있었듯이 말이다. 이와 비슷하게 감금이나 모욕적이고 비인간적인 처벌, 심각하고 명백한 차별 행위나 강제 장시간 학습 행위 등도 ‘아동학대’라는 렌즈로 바라볼 수 있다. 무엇이 ‘아동학대’인지, 그리고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뿐 아니라 다른 아동학대들까지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할지, 더 깊이 있으면서도 철저한 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 학교 체벌과 학대에 대하여

김병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 1. 의미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함. 또는 그런 대우.

학(虐): 모질다, 사납다, 혹독하다

대(待): 기다리다, 대비하다, 대우하다

### 2. 학대의 죄

#### 가. 형법상의 학대의 죄

형법 제273조 학대, 존속학대

제1항: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74조 아동학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인도를 받은 자도 같다.

관련판례: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학대라 함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이러한 학대행위는 형법의 규정체제상 학대와 유기의 죄가 같은 장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형법의 체계상 학대는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에 편제되어있다.)

#### 나. 특별법상의 학대의 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 2014. 9. 29.)

##### 1) 목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적용범위

①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상의 아동으로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한다.

②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

③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④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 단, 성폭력 등에는 성폭력에 대한 특별법이 적용

#### 다. 특별법의 생성 원인(제정이유에서 발췌)

아동의 양육은 가족구성원 차원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이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과 교화가 필요하다.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라. 소결론**

형법상의 학대의 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유기에 준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였으나, 특별법은 유기에 준할 정도가 아닌 방임하는 정도까지도 포함시켜 학대의 범위를 넓히고 형법상 흑사의 경우 16세 미만에게 적용되나 흑사 또한 학대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그 연령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결국 형법상 학대죄로는 아동학대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3. 학교체벌에의 적용**

**가. 형법에의 적용**

1) 유기에 준할 정도가 되어야 형법이 적용되므로 형법상 학대죄의 적용보다는 폭행이나 상해 또는 모욕 등으로 의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2) 실제로 학교 체벌에 있어서 체벌이 과한 경우 학대죄 보다는 상해나 폭행죄로 처벌을 하였습니다.

예) 대구지방법원 2011. 12. 24. 2011고정1830 판결(상해)

중학교 체육교사가 재학 중인 피해자 B(16세)가 착용한 귀걸이를 압수하였었는데, B가 귀걸이를 돌려달라고 하면서 버릇없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잡아 머리를 책상에 3회 들이받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차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뒷부분을 잡고 머리를 짓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2주)

예) 인천지방법원 2009. 4. 23. 2009고단1010 판결(상해)

**【판결요지】**

[1]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그 시행령 등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방법으로서 체벌은 허용되지 않으며, 기타 '지도'의 방법으로서도 훈육·훈계가 원칙이다.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으로서, 교사의 체벌은 교육적 목적이 있다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행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학생에 대한 체벌은 금지하되, 교육상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도저히 학생의 잘못을 교정하기 불가능한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교사의 체벌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 교사가 초등학교 2학년생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나무 막대기로 엉덩이를 수십 회 때려 각각 2, 3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위 징계행위는 그 방법 및 정도가 교사의 징계권행사의 허용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교사가 초등학교 2학년생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나무 막대기로 엉덩이를 수십 회 때려 각 2, 3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상해를 입힌 사안

A(남, 8세) 부정행위 및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80여대  
B(여, 7세) 숙제를 해오지 않았고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7대

반면에 학대가 인정된 경우인데, 형법이 아닌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가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400 아동복지법위반

A씨는 사실관계에 있던 B씨의 10살난 자녀에게 숙제나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머리, 팔, 허벅지 등을 회초리로 수십 회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A씨는 양육하는 보호자로서 훈육이라고 주장했지만 앞선 처벌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할 수 없는 처벌이라며 징역 6월, 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감을 명령했습니다

2) 어린이집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457 아동복지법위반

2012년 11월 대전 동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 오씨는 갓 돌을 지난 피해자 신양이 밥을 삼키지 않자 버릇을 고쳐준다는 이유로 양쪽 귀를 잡아당기고, 이마와 볼을 때려 전치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의자인 오씨는 징역 8월, 어린이집 원장은 학대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했다는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나. 아동학대처벌특별법에의 적용

1) 적용가능여부

대다수의 학생 연령이 18세미만이고 학교에서의 교사는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학생들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적용은 가능한 것으로 보임

2) 판례의 태도(2004. 6. 10. 2001도5380)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르면 교사는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있고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데 그 지도에 있어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인 이른바 체벌로 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훈육, 훈계의 방법만이 허용되어 있는바, 교사가 학생을 징계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징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상 필요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비하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어서,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3.18.>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3.18.>

④ 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⑤ 제1항제5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⑥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18.>

⑦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2011. 3. 18 개정)

(개정전 ⑦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1998. 2. 24. 제정)

위 판례는 2004년에 나온 것으로 초중등교육법이 2011. 3. 18. 개정되어 시행되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여전히 위 판례가 진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체벌이 금지됨은 주장할 수 있으나 아동학대처벌법이 주로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아동들을 구호하고자 발생한 법이라는 점에서 볼 때 학교 체벌에 적용되는 것은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문제제기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모 고등학교의 징계 규정(별책- 어느 고등학교이며 출처를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하여 내용만 기입합니다. 위 법과 마찬가지로 체벌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학교의 장은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①학교 내의 봉사: 학교환경 미화, 교사들의 업무보조, 교재·교구 정비,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②사회봉사

-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③특별교육이수

-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 교육
- 심리치료
- 대안학교에서의 단기간 개별교육 이수

④퇴학처분

**4. 만일 학교에도 아동처벌특례법이 적용된다면?**

**1) 적용여부**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적용하려고 한다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2) 신고의무의 발생**

아동처벌특례법에는 신고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여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의무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교사 등을 포함하여 24개의 예시가 있으나 그냥 누군가의 실질적 보호자이면 모두 포함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특례법이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점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해석상 적용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동학대라 하면 학교체벌을 떠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조항을 바꾸는 것보다는 캠페인 등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옳을 것이며 더 좋은 것은 차라리 ‘학교체벌에 관한 특별법’등을 제정해 체벌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5. 결론

학교 체벌을 아동학대처벌법상으로 포섭하는 것은 법률해석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적 합의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교사의 권위 즉 교권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건으로 교권은 상대방(=학생)으로부터 존중을 받을 때 확립되는 것이고 이것은 인식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사를 채용할 때 학벌, 임용고시 등의 성적이나 스펙위주의 채용보다는 실습을 통하여 학생들과 교감이 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성적위주의 교육보다는 교사와 학생간, 학생과 학생간, 교사와 교사간의 대화가 주가 되는 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겨레)

삼척 자살 중학생 체벌교사 불구속 입건...간접체벌도 가혹행위냐 놓고 논란

2014.11.12.

아동복지법 위반·폭행 혐의 적용에  
교사 “오리걸음 등 시켜...폭행 인해”  
교총 “무리한 혐의...생활지도 못해”  
시민단체 “시대착오...진상 밝혀야”

지난 9월 강원 삼척의 한 중학생이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 학교 교사가 생활지도를 명목으로 학생에게 가혹행위를 했으며 아동복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간접체벌도 가혹행위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지만 교총 등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강원 삼척경찰서는 숨진 ㄴ(중3)군을 체벌한 ㄱ(49)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ㄱ 교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ㄱ 교사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ㄴ군 등이 학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수차례 적발되자 이들을 생활지도 하는 과정에서 오리걸음과 운동장 뛰기, 엎드려뺨치기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군은 지난 9월12일 자신의 집에서 ‘선생님이 별주고 욕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목을 매 이튿날 숨졌다.

경찰은 ㄱ 교사가 생활지도 과정에서 가벼운 폭행도 했으며, 선도협의회를 열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생활규정 어디에도 학생들에게 오리걸음 등을 허용한 내용이 없고, 체벌 시간도 지나쳤다”고 법 적용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ㄱ 교사는 “똑같은 학생이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 협의회를 열지 않고 지도했을 뿐 폭행은 절대 없었다. 체력단련을 시킬 수 있도록 돼 있는 교내 학생선도규정을 따랐다”고 말했다.

경찰의 법 적용을 두고 엇갈린 시각이 나오고 있다.

정덕화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중학생이 숨진 사건은 안타깝지만, 간접체벌까지 처벌하고 징계한다면 아무도 학생 생활지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성철 ‘중학생 사망 진상규명 및 교사체벌금지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일부 교사와 단체가 ‘벌도 못 주게 하면 앞으로 학생 지도를 어떻게 하란 말이나’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데, 이는 뒤집어보면 학생을 지도하는 방법이 ‘벌을 주고 때리고 폭언을 하는 것밖에 없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직도 학교 현장에선 만연해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직간접적 체벌 등을 막는 아동학대 예방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강삼영 도교육청 대변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도 ‘도구와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 신체에 고통을 가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직접 때리는 것뿐 아니라 책상을 들고 서 있게 하거나 오리걸음을 하게 하는 등의 간접체벌도 학생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연합뉴스)**

**법원 "훈육 차원 뺨 때린 것은 '아동학대'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훈육 차원으로 아이들의 뺨을 때린 것까지 '아동학대'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서울시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가 운영 중인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가 이뤄졌다는 신고를 받은 서울시 영등포아동학대예방센터는 지난 1월 3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김씨는 아동학대예방센터 측과의 면담에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잘못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뺨을 때린 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붓거나 멍이 들 정도로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아이들도 말썽을 부릴 때 김씨가 볼을 세게 때리거나 손바닥 등을 때린 적은 있다고 말했다.

아동학대예방센터는 그해 2월 "김씨가 훈육의 일환으로 아이들의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했고, 그 강도가 세지는 않았다"면서도 "이는 손, 발로 아동의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에 해당해 신체 학대로 판정된다"고 구로구청 측에 통보했다.

구청 측이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을 사유로 사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자 김씨는 이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아이들의 뺨을 때린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여러 명이 함께 지내는 시설의 질서를 흐리는 아동들을 훈계하고 주의를 줘 올바른 행동을 지도하기 위한 목적이 주된 것이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아동학대라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4.10.03.)

**(연합뉴스)**

**영어유치원 교사가 두 살 어린이 방에 가두고 왕따시켜**

**해당 교사 아동학대 혐의 입건, 원장은 사기혐의로 조사**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김소연 기자 = '영어 유치원'으로 알려진 유아 대상 어학원 교사가 수시로 어린이들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최근 만 2~3세 어린이를 수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서구 내동 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 교사 이모(24·여)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두 살 난 어린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 시간 동안 어두운 방에 가두는가 하면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밀어 넘 어뜨리는 등 어린이 8명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화장실에 가야 한다면 손을 잡아끌고 다녔고, 수업 시간에는 일부 어린이를 1시간가량 구석에 세워놓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의 행동을 옆에서 지켜보고도 말리지 않은 보조교사 최모(24·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8월 한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학원 CC(폐쇄회로)TV 2개월 분량을 조사해 아동학대 의심 장면을 찾아냈다.

이어 의심장면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보내 학대 여부에 대해 감정을 의뢰한 결과 모두 아동학대로 판정받았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학원 업무가 너무 과중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반 아이들을 한 번에 통제하려고 하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동학대와 별도로 학원 대표 안모(42·여)씨에 대해 부실한 교구와 교재를 사용하도록 한 혐의(사기 등)로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안씨는 고품질 교구와 프로그램을 이용한 교육을 하겠다고 광고해 수강료 명목으로 어린이 1명당 월 87만원 가량을 받아 챙기고 나서 부실한 교구와 교재를 사용도록 한 혐의다.

해당 어학원은 유명 프랜차이즈 어학원의 분원으로 학부모 사이에서는 '영어 유치원'으로 알려졌지만, 교육 당국에는 '학원'으로 등록된 곳이다.

피해를 본 어린이의 어머니는 "맛별이는 하다 보니 아이와 놀아주지 못하는 것이 미안해 비싼 영어 유치원을 보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며 "도대체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곳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학원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문을 닫았다. (2014.10.23.)

### (연합뉴스)

#### 검찰, 가벼운 아동학대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벌

#### 서울중앙지검에 아동보호자문단 구성...현안별 수시 회의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맞춰 10일 아동학대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아동보호자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가 단장을 맡았고, 오종남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학자, 의사, 활동가 등 전문가 16명이 참여한다.

자문단은 현안별로 회의를 열어 훈육으로 치부됐던 아동학대의 범죄 개념을 정립하고 수사의 전문성·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피해아동의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검찰은 중대한 아동학대범죄는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확보하고, 가벼운 정서적 학대나 방임 등에 대해서는 교육 및 상담을 조건으로 보호자를 기소유예 처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실제로 검찰은 늦게 귀가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올 3월 11세 아들을 1시간 동안 현관문 밖에 세워둔 부모에 대해 상담을 성실히 받았다는 조건 아래 기소유예 처분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4.11.10.)

## 교육적 벌이라는 인식에서 폭력이라는 인식으로

준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고등학생)

### 1. 체벌의 경험

- 체벌을 중학교 때 많이 받았다. 모두 생각하기 싫은 기억들이다. 갖가지 체벌들이 있었다. 기본형은 손바닥이나 엉덩이 같은 신체 부위를 때로 직접 맞는 거고, 거기서 갖가지 파생형이 나왔다. 교실에서 누군가가 잘못해서 체벌을 받으면 주변 자리에 앉은 학생이 연대책임으로 같이 맞는 경우도 있었고, 학생들 서로 때리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간접체벌'도 빈번했다. 엎드려 뺨치는 자세 등등..
- 체벌을 받을 때는, 인간적인 존엄이 깡그리 무시당하는 기분이 든다(당연한 사실이다). 누군가에게 강제로 신체적 폭력을 당해 굴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예의 기분과 비슷한 것. 체벌이 금지되어야 하는 제일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엄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다. 학생에게 체벌은 심각한 트라우마로 남는다. 두말할 것도 없다. 직접적으로 언어맞거나 가혹행위를 당하는데 트라우마로 남지 않을 리가.
- 체벌은 교육적 벌(어떤 행위가 재발되지 않게 반성하자는 차원에서 내리는 벌)이라기보다는 징벌(응징)에 가깝다. 또한 어떠한 절차가 있는 징벌도 아니다. 대부분 교사의 자의에 의한다. 내가 경험한 체벌은 대부분 교사의 자의에 따라 이루어졌다. '교실이 더럽다 -> 청소당번 나와서 체벌', '수업 준비가 너무 안 됐다 -> 체벌', '슬데없는 농담으로 분위기 흐림 -> 체벌' 등등. 이러한 체벌의 특성상 체벌은 직접적인 폭력행위와 함께 질책과 폭언이 동원된다(이렇기에 더 트라우마 같은 정신적 상해로 남기 쉽다). 이런 맥락에서 '감정이 실리지 않은 체벌' 같은 말은 어불성설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때리는 사람이 감정을 신지 않는다고 맞는 사람이 감정 없이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
- 체벌은 익숙해지기 때문에 더욱 무섭고, 근절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초등학교 때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체벌을 경험했다. 손바닥 맞기, 무릎꿇기, 손들기 정도. 초6때 와서 엎드려서 고무야구배트로 맞는 체벌을 경험했는데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체벌이라는 행위 자체가 좀 무섭게 다가왔달까. 친구들이랑 '저건 너무 심하다' 뭐 이런 반응을 나눴었다. 내가 처음 생각하는 체벌의 경험이란 이렇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체벌을 처음 봤을 때는 충격적이지 않았을까.
- 그런데 중학교에 와서는 그런 초등학교 시절 꽤 심했던 강도의 체벌이 일상으로 일어났다. '일상적으로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체벌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생들은 얼마 없었다. 체벌이 익숙해진 것이다. '잘못했으면 맞아야지' 하는 인식이 당연해지고, '권력이 있는 사람(교사)이 없는 사람(학생)을 때려도 된다'는 생각이 내면화된다. 체벌은 이렇게 익숙해지기에 무섭다. 그렇기에 체벌을 근절하고, 잘못된 폭력으로 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2. 체벌, 교육적 벌이라는 인식에서 학대(폭력)이라는 인식으로

- 체벌을 바라보는 기존의 두 가지 시선에는 '폭력'과 '교육적 벌'이 있다. 예전에는 체벌을 폭력으로 본다기보다는 별로 바라보는 시선이 우세했다. 잘못했으면 맞아야 한다는 시선이다. 하지만 교화가 목적이라기보다는 폭력에 가까운 체벌은 교육적 벌이라고 하기 어렵다. 또한 체벌은 교사가 자의적으로 휘두르는 면이 강하다. 지금은 체벌을 별로 바라보는 시선과 폭력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비등비등한 것 같다. 체벌을 교육적 벌이 아닌 폭력이라는 인식으로 끌고 가야 한다.

- 2011년 체벌금지 조치 때 잠깐 학교에서 체벌이 사라졌다. 하지만 다시 부활했다. 학교의 교사들은 그냥 이 조치를 '체벌 말고 다른 벌을 쓰세요' 라는 조치로 받아들인 것 같다. 일명 오장풍 사건 때문에 체벌금지 조치가 내려진 모양새라 '심각한 체벌만 아니면 돼지' 하는 인상이었던 것 같다. '왜 체벌이 잘못된가, 체벌은 폭력이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지는 못했던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은 '교육청이 학교 현장을 모른다고, 체벌금지를 교육청의 생각 없는 행정조치 정도로 생각해 그냥 계속 다시 체벌을 했었던 것 같다.
- 아동학대특례법이 제정되었다. 아동학대특례법은 특별히 학교 안의 체벌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교 안의 체벌을 아동학대로 봐도 무방하다고들 한다. 체벌을 아동학대의 프레임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체벌이 폭력이고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에. 기존 체벌은 이름에도 '벌'이 있듯이 정당화될 수 있는 '교육적 벌'이라는 인식이 남아있다. 이런 인식을 줄이기 위해 체벌을 학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 학교에서 아동학대특례법 관련해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 다른 학교들은 모두 어떤지는 모르지만 주위에 조금 물어본 결과 다들 잘 모른다고 한다. 교육청 등이 교사에 의한 폭력 같은 걸 아동학대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체벌사건을 적극적으로 아동학대특례법 위반사례로 고소·고발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현재 법원의 판례는 약한 수준의 체벌을 교육적 벌이라며 용인하는 경우도 있다지만 이 부분은 운동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체벌을 아동학대법으로 처벌한다면 어느 정도 인식이 변화하지 않을까. 적지만 체벌을 당한 학생이 교사를 법적으로 쉽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기존 체벌금지 조치가 어느 정도 확산되지 않은 원인에는 딱히 처벌이 없어서라고도 생각한다.

### 3. 이후의 과제 - 학교 안의 권력관계

- 체벌이 아동학대의 범주로 들어가도 교사의 가혹행위는 줄어들까? 2011년 서울시교육청에서 체벌금지를 선언했는데 교사들은 오히려 감지를 마구 시키는 식으로 우회해 학생을 괴롭혔다(이후 간접체벌은 허용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다 그대로 앞드려뺀채나 운동장돌기 등의 간접체벌을 시키게 되었다).
- 아동학대 프레임으로 체벌을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사회적으로 없어져야 할 것이라 선언하는 건 필요하겠지만, 학교 안의 권력관계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체벌이 안되자, 감지를 시키거나 모욕을 주거나 아니면 보복성으로 교칙을 칼같이 적용하는(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벌점 폭탄을 준다거나), 이런 종류를 모두 학대행위로 처벌하는 식의 대응은 어려울 것 같다.
-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이런 교사들의 팽강은 학교가 민주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다. 수업시간에 지켜야 할 것이나, 징계를 받아야 할 사항 같은 게 따로 합의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학교공동체에 중대하고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만 징계나 교육벌을 정하고 그 외 사항은 평화로운 방법(대화 등)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 이러한 아동학대 등의 프레임으로만 보기 힘든 교사의 가혹행위 문제.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 아동학대, 체벌 그리고 학생 인권

이기규 (인권배움터 봄, 초당초 교사)

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에서 설명하는 아동학대의 범위는 폭이 넓어 보이지만 현실적인 법 적용은 쉽지 않다. 특히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흔히 '교육'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왔다.

체벌은 아동 학대인가 아닌가? 학생에서 모욕적인 말을 퍼붓는 것은? 별점이 높다는 이유로 퇴학시키거나 퇴학을 권고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아동 학대일까 아닐까?

지금껏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동학대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당장 학생에게 직접적인 체벌을 하거나 얼치려 등을 하는 교사들에게 당신이 하는 행위가 아동 학대라고 한다면 아마 크게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것은 교육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그렇다면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적용되는 가정에서는 다를까? 학원에 빠졌다고 매를 맞고 게임만 한다고 밥을 굶기고 거짓말을 했다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한다. 이런 일들을 학대라고 하면 부모들 또한 이렇게 이야기 할 것이다. 이것은 자녀 교육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정말 이러한 어른들의 행위들은 아동학대가 아니라 교육상 불가피 한 선택일까? 교육은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감수해야 할 만큼 대단한 가치인가?

### 때려서도 가르쳐 주세요. 애가 먼저 맞을 짓을 했는데요

체벌 금지 조치 이후에도 학부모 상담을 하면 때려서라도 가르쳐 달라는 말을 하는 학부모들을 종종 볼 수가 있다. 나는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을 공부를 잘하게 할 자신도 없지만 때려서 공부를 잘 하게 만들 자신도 없다. 공부는 자신의 내적동기가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한다고 절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때려서라도 수학공식 영어단어를 암기 시키면 그 친구는 공부를 한 것인가?

생활 태도와 습관은 어떤가? 못된 습관은 때려서라도 바꾸어야 하는가? 세상의 못된 습관이 가진 수많은 어른들은 어린 시절 한 번도 맞지 않아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걸까? 아니다. 그들은 지금 세대보다 더 많이 맞고 맞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애가 먼저 맞을 짓을 했어요.”

학생들 중에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다. 맞을 짓을 했으니 당연히 맞아서 정신머리를 고쳐나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그들 스스로도 여러 가지 잘못을 하겠지만 자신의 잘못은 맞을 짓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 휘두르는 폭력은 언제나 정당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맞을 짓을 했으며 힘있는자들의 무자비한 폭력은 이게 다 우매하고 버릇없는 이들을 고치기 위한 교육적 방편으로 합리화 되었다.

“수업시간에 통제가 안 되고 기어오르는 학생에게 그럼 어떤 방법을 써야 해요?”

체벌 금지에 항변하여 이런 말을 하는 교사들도 많다. 몇몇 힘 있는 학생도 이렇게 말한다.

“나보다 힘도 쥐뿔도 없는 게 내 말을 듣지도 안고 기어오르는 데 가만있으란 말이에요?”

교사의 말이 인정된다면 이런 학생들의 반응도 인정하란 말일까? 아동학대 만이 아니다. 교사의 체벌, 노골적인 따돌림은 학생들 사이의 폭력과 따돌림과 거의 같은 형태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의 범주가 아니라 교육이다. 사실 아동학대, 학교 폭력, 교사의 체벌은 이름만 다를 뿐 모두 같은 폭력의 형태를 보인다. 결국 이런 미화하는 말들을 다 걷어내고 보면 남는 것은 강자가 약자에게 가하는 폭력만이 남을 뿐이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학대?**

모든 교사는 신고 의무자이다. 하지만 교사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는 당사자가 되기도 한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과 체벌을 교육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교사가 아동학대에 민감할 수 있을까? 학부모의 가정교육이라는 미명아래 자행되는 학대에 소리 높여 반대를 외치고 신고를 할 수 있을까?

‘성적만 오를 수 있다면’, ‘공부만 잘 할 수 있다면’ 체벌을 해도 된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는 학부모들이 학교와 사설학원의 폭력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

또한 모호하고 넓은 범위의 아동학대의 기준 속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고 판결하는 사법당국의 처리도 법적인 기준이 아니라 일명 사회적 통념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신고 했지만 경찰의 무시 속에서 살해 된 뒤 암매장 당한 여성의 사건은 우리나라 사법당국의 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을 여실히 보여준다. 여성에 대한 폭력조차 이렇게 인일하게 생각하는데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은 기대하기조차 어렵다. 그러나, 이들은 학교나 가정에서 벌어지는 훈육이나 교육의 차원에서 행해졌다는 체벌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다.

결국 어른들의 폭력과 억압 속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의 선택을 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관심거리조차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힘써야 하는 교사, 학부모 그리고 사법당국과 정부 모두가 오히려 아동학대 가해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너무 지나친 표현일까?

**학대를 양산하는 사회에는 문제가 없나?**

과도한 경쟁 사회에서는 폭력이 용인된다.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 살면서 살아남기 위해, 출세하기 위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폭력은 당연히 필요해진다. 또 부모 모두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생계가 불가능한 우리 사회에서는 아이들에 대해 정상적인 가정교육은 불가능하다. 결국 가정교육은 통제나 감시, 폭력과 공포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그리고 기존에 가정에서 해왔던 많은 교육들은 학교와 학원이 떠맡게 되었다. 하지만, 학교든 학원이든 학대를 예방하고 폭력이 없는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 사회의 보수화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서슴없이 드러내는 차원까지 오고 있다. 무한 경쟁과 통제, 감시와 억압, 차별과 혐오로 만들어지는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이상하지 않을까?

**교사 - 학대자와 신고자란 이중적 존재에서 학생 인권옹호자로서 변화**

그럼 교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교육상 어쩔 수 없다며 폭력을 행사할 것인가? 아니면 가정에서의 학대를 성실히 신고하는 신고자로 남으면 되는 걸까?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사는 적극적인 학생인권 옹호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본인 스스로가 학생을 단지 통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으로 존중하고 그들의 인권을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스스로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위협하는 학교 시스템과 국가 교육정책, 무한경쟁 사회에 대해서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 인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다. 어린이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인권에 대해 당당히 요구 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의 운영, 규칙의 제정 등, 학교에서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어린이와 청소년과 관련 있는 법률과 제도의 제정에는 어린이 청소년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어른들을 향해 “이건 학대예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어린이에게 움찔하고 폭력을 멈추는 어른들이 많아질수록 아동학대, 폭력, 체벌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설 자리도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결국 체벌과 아동학대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다. 어린이 청소년이 보호 대상이 아니라, 어른들에 의해 함부로 휘둘러지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인권을 이야기 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에도 연대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 때, 학교에서 진정한 교육이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 토론문

김은정 (세이브더칠드런 국내옹호팀장)

발제문 <학대와 체벌 사이의 관계>는 체벌과 학대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있는가를 질문하면서 체벌이 학대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체벌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것을 징계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아이와 청소년의 존엄성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체벌은 학대의 일종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토론자는 발제자의 논지에 공감하며, 체벌에 관대한 한국 사회에서 체벌 근절을 위해 가능한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 1. 체벌에 관대한 사회

지난 10년간 아동학대는 3배 이상 증가하였고, 학대 받는 아이들 중 82%는 가정 내에서 학대를 받고 있으며, 76%는 친부모에게, 39%는 매일 학대를 받고 있다(2013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또한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2명에 달했는데, 이는 최초 신고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닌 경찰에 신고된 경우나, 사망 후 경찰에 신고된 아동 수는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의 수는 사실상 22명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정 내에서 아동을 보호해야 할 사람에 의해 보호가 아닌 폭력의 대상이 된 아이들의 규모가 과연 어떠한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2013년 인천, 울주, 칠곡 등에서 발생했던 아동학대 사망사건들은 모두 가정 내 체벌에서 비롯됐다.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학대행위자는 거짓말 등 아이의 나쁜 버릇을 바로잡기 위해 훈육 차원의 체벌을 했다고 주장한다. 훈육차원의 체벌, 이것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한, 은폐된 공간인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벌어지는 폭력은 일상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늘 열려 있게 된다. 가정 내에서 체벌이 근절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2014년 9월은 학대로 고통 받는 아동의 보호와 관련하여 기억해 둘만한 달이다. 지난해 울산과 칠곡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제정된 ‘아동학대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9월 29일 시행되기 시작했다. 특례법 시행으로 이제 아동학대행위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아동을 학대하는 사람이 친권자일 경우 친권을 제한하는 임시조치도 가능해졌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도 신설됐으며 신고의무자의 범위도 확대됐다. 한 마디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확대됐고 학대 예방업무 관련자들도 늘어났다.

그런데 실상은 좀 답답하다. 최근 아동복지시설에서 훈육 차원으로 아이들의 뺨을 때린 것까지 ‘아동학대’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특례법 시행 이후에 나온 판결이라 더욱 답답하다. 기사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의) 김씨는 조사과정에서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른 경우 훈육의 일환으로 뺨을 때린 적은 있지만 붓거나 명이 들 정도로 세게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했고, 아이들 역시 김씨로부터 불이나 손바닥 등을 맞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훈육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체벌은 세기가 약하다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심각한 상해가 있다면 학대이고 붓거나 명이 들 정도가 아니면 반복해서 맞더라도 학대로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시각은 학대와 체벌은 다르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체벌이 사회적·문화적으로 자녀 훈육방식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에선 체벌을 해롭고, 모욕적이거나 폭력적이라고 간주하지 않는다.

### 2. 체벌금지의 실행을 위하여

1979년 스웨덴이 <부모 및 보호자법>에 “체벌”금지를 명시한 최초의 법을 만든 이후 현재까지 43개 국가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법제화 과정을 통해 아동에 대한 체벌을 근절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 나라의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체벌을 확실하게 금지하려면 법에 반드시 “체벌”이라는 말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sup>8)</sup> 그리고 체벌의 정의가 필요하다면 유엔아동권

8) endcorporalpunishment.org 참조.

리위원회가 채택한 정의가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이 정의는 체벌의 형태와 정도를 막론하고 모두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위원회는 물리적인 힘이 사용되고, 아무리 가볍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통 혹은 불편함을 유발하도록 의도되는 모든 처벌을 체벌로 정의한다. 대부분 체벌은 손이나 채찍, 막대기, 벨트, 신발, 나무주걱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아동을 때리는 것(손으로 때리기, 뺨을 찰싹 때려붙이기, 엉덩이 때리기 등)을 포함한다. 또한 체벌은 발로 차기, 흔들기나 아이를 집어던지기, 할퀴기, 꼬집기, 불에 태우기, 물에 데우기, 또는 강제로 먹이기도 포함한다. 위원회의 관점에서 체벌은 예외없이 모멸적이다. 덧붙여 비(非)신체적 형태의 처벌 역시 잔인하고 모멸적이며, 아동권리협약과 양립할 수 없다. 이러한 처벌에는 예를 들면 무시하기, 창피주기, 비난하기, 책임전가하기, 협박하기, 겁주기, 조롱하기 등이 포함된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8호).

국가는 모든 종류의 폭력에서 다른 인구집단 (예를 들어 여성, 노인 등)을 보호하는 일에 타협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아동도 이와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가정을 포함하여 체벌의 완전한 금지 입법을 달성한 나라들 대부분은 대중의 지지와 공감을 얻기에 앞서 먼저 입법에 나섰다. 아동보호의 입법 절차는 대중의 의견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끌어 나가야 한다.

실제로 1979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체벌금지를 법제화한 스웨덴의 경우를 보자. 2011년 조사에 따르면, 스웨덴 부모 중 3%정도가 지난 해 아동을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응답했으나,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대부분의 유치원 아동은 손바닥으로 맞았고, 1970년대 아동 50% 가량이 손바닥으로 맞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979년 법으로 체벌이 금지된 이후 1980년대에 70%가 맞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2011년에 이르러서야 3% 정도만이 체벌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40년에 걸쳐 진행된 변화였다. 이처럼 스웨덴이 체벌금지에서 긍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1) 신체적, 굴욕적 처벌에 반대하는 지난 40년간 지속적인 교육과 정보제공이 있었기 때문이고, 2)신체적, 굴욕적 처벌에 반대하는 법과 함께 위기 아동을 대하는 교사, 사회복지사, 경찰과 같은 중요한 전문가 그룹에 대한 교육과 부모교육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3)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과 집단수준에서 아동 보호에 대한 책임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아동에 대한 신체적·모멸적 처벌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줄어들었고, 위기 아동에 대한 인지가 사회적으로 향상됐으며, 아동학대사망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체벌금지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범법자를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보호를 위한 교육과 제재에 있다. 집이라는 사생활 영역에서 보호자에 의한 아동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이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 가정 등에서의 아동학대와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폭력과의 연관성

성태숙 (구로과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

### 1. 아동폭력 성향의 요인

심각한 폭력성을 보이는 아동들이 그런 행동양식을 어떻게 습득하게 되었는지 문제의 근원을 찾는 일은 폭력을 근절하게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들 중 하나다.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결국 그 개인에 의한 자발적 이루어진 것이거나 혹은 사회적 형성과정을 통해 습득된다고 하는 두 가지의 커다란 분류 체계 안에서 구분될 수밖에 없다.

만약 이런 분류 기준을 그대로 인정하고 여기에 폭력의 문제를 적용해보자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만약 한 개인이 보이는 일정한 폭력적 경향성이 그 개인의 고유한 특성에 의한 자연적 성향이라면 폭력적 성향이란 비정상적이고 비적응적 경향으로써 치료나 교정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처럼 환경적 영향으로 후천적으로 습득된 것이라면 아동에게 그러한 환경과의 단절 혹은 올바른 양육 환경의 제공을 위해 사회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특히 폭력적 성향과 같은 부적응성은 그 개인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공동체 자체가 심각한 위협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공동체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공동체의 갈등관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폭력적 성향을 나타내는 학생 개개인이 과연 둘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아내는 것은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일이다. 전자라면 다양한 신체적·심리적 진단과정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신체 조직 특히 뇌조직의 일부 변성 등이 공감력을 떨어뜨려 타인에 대한 폭력을 유발하는 것인가 하는 복잡한 임상진단과정이 동반되어야 한다. 사냥이나 전쟁 등이 인류의 생존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일들이므로, 그 과정에 필연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는 폭력성이 인류의 본성으로 자리 잡을 수 있고, 특히 일부 개인들에게는 과도하게 그런 경향성이 발견될 수도 있다는 추론도 얼마든지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런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사이코패스 등과 같은 폭력성은 개인에 대한 진단과 분류, 예방과 치료 및 교정이 필요한 문제가 되어 버린다. 이는 자칫 인권을 침해하게 될 수도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가 되어 버리지만 어쨌든 영 비현실적 상상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 안의 폭력을 다루려면 고도의 사회적 대처 능력이 필요해진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그리고 그 대처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혹은 그녀가 필요한 공감력을 증가시켜 불필요하게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도록 전문적인 양육이나 교육, 치료나 교정 등과 같은 사회화 과정이 충분할 때까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전자만큼 아니 전자보다도 후자는 폭력성에 대해 훨씬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한다. 인간화 자체가 모방의 과정을 가지고 특히 아동기의 양육은 개별 인간의 바탕을 형성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해진 심각한 학대 등은 인격의 형성을 훼손하여 폭력성을 비롯한 다양한 부적응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일이고, 이미 선행연구들은 수차례 이루어진 바 있다. 따라서 폭력 예방 대책을 위해 부모 교육이나 학대 예방 등과 같은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정설로 알려진 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하는 지점이 있다. 즉 폭력의 문제가 아동학대 등과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 가면 폭력의 문제는 다시 문제가 있는 부모를 교육하거나 상담하여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게 하거나 혹은 그런 개선의 여지가 없는 부모에게는 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하는 개별 부모의 책임이나 자질 문제에 집중하게 되어 그 사회적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이다. 이 경우 분명한 부모의 잘못이 있긴 하지만 그 배경에는 사회적 스트레스가 아주 높거나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역량이나 인프라가 아주 미비하고 특히 아동양육과 관련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더욱 중요하게는 아동의 체벌에 대해 양육의 한 방법으로 관대히 허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한다거나, 아동양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모 교육이나 상담체계가 부족하다고 하는 사회적 배경이 존재하는데 이런 점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채 문제있는 부모 개인을 탓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책임 면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부모 개인의 잘못을 전부 사회적 책임으로 희석시켜야 한다는 것도 물론 아니다. 그렇지만 개인과 사회 양자의 책임을 적절하게 규명하고 그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또 사회적 측면에서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밝히는 일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공론을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문화 및 의식의 영역까지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사회적 과정이 마련되고 사회적 실천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런 지난한 과정이 없이는 지금의 폭력의 문제를 온전히 다룰 수 없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심화라고 하는 주요한 사회경제적 상태에 대한 진단과 처치 또한 빠질 수 없는 부분으로 함께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폭력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란 매개물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를 진단해보는 것과 다름 아니다. 사실 결론은 우리 사회는 얼마나 폭력적인 사회인가를 들여다보는 것이고 그 속에서 가장 영향 받기 쉬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이런 문제가 어떤 왜곡된 양상으로 나타나고 그 사회적 여파가 어떠한 것으로 보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이 자리의 의미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논의를 모으지 않는다면 이 자리는 참으로 그저 아프고 또 아픈 자리가 될 뿐이다.

## 2. 폭력 문제 해결의 전제

앞의 전제들을 간략히 추려보면 폭력은 개인과 개별 가정 및 사회 모두에 의한 기원을 갖고 있다. 심지어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내재된 부분이지만 폭력이 발생하는 메카니즘 즉 힘의 사용 그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것이다.

그러나 힘의 사용이 부정적 가치를 갖는 것은 잘못된 대상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지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맥락을 상실한 힘의 사용은 문제가 되는 것으로 폭력은 관리되어야 하는 갈등 상황이란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런 전제를 장황히 설명하는 것은 폭력은 다양한 유발 요인이 있으며, 그 유발 요인들이 어떤 조건을 만나 활성화되었는지는 매우 신중하게 연구되고 밝혀져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이다. 한 번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때로는 이런저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나 사회에 폭력이 만연한다고 하는 측면들은 분명 정말 그런 것인지 되짚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일부의 그런 주장들은 근거가 불분명한 채 제시되고 보통은 달성하고 싶은 다른 목적을 은폐한 채 주장되는데 그럴 경우 그런 주장 자체가 매우 폭력적이고 또 다른 갈등 상황을 심각하게 유발시키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즉, 폭력은 어느 시기 어느 사회에서도 있어온 문제이고, 그 사회는 늘 이런 폭력의 문제를 관리해왔을 뿐이다. 한 사회가 매우 폭력적이라면 그것은 그 사회의 관리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것으로 진단하고 접근하는 자세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폭력은 개별의 문제가 되어 문제가 있는 개인이나 개별 가정을 속출하고 배제하거나 소외하는 방식으로 매우 폭력적이고 인권 침해적 해결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은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방식에서 예방적 조치조차 미비할 경우 가해자나 부모들이 실컷 일을 저지르도록 사회적 방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은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속에서 가해자만을 엄벌하고 비난하는 방식으로만 일을 해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방식이 지금 대한민국이 취하고 있는 일반적 방식일 뿐이다.

문제가 드러나지만 않으면 안으로 얼마든지 굶든지 말든지 무관심하다 자극적인 방식으로 드러나기만 하면 언론부터 별따처럼 달려들어 개인과 가정에 융단폭격을 퍼붓고, 교사나 학대 아동의 문제를 다루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교육청 혹은 경찰 등의 사법 체계를 비난하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국회에서 법안 하나를 상정하는 식으로 폭력 행위에 따른 일정한 절차들이 매번 주어진 궤도를 따라 무한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무엇인가가 빠지거나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그 지점을 찾아야 한다.

## 3. 가정에서의 아동학대와 학교 및 지역사회 폭력의 연관성

가정에서 학대를 경험한 학생들을 돌보는 일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런 학생들은 무엇보다 힘의 논리를 우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율성의 발달에서 어려움을 보이고, 또 발달이나 성숙을 위해 써야 하는 에너지들을 눈치를 보고 자신을 방어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보니 상대방이 폭력적인지 여부를 끊임없이 탐색한다. 그러나 상대가 전혀 폭력적이지 않을 것 같은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안도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안한 생각에 끊임없이 꾸중이나 야단을 들을 것 같은 행동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런 아동들 중 특히 남자 아동들은 힘에 의해 상대를 자신의 의지대로 조종하는 경험을 이미 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방행동들을 해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많다. 이들은 다른 비행학생들과 함께 무리를 짓거나 혹은 단독으로 부적응행동들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심리적 바탕에는 성인에 대한 분노와 낮은 자존감이 자리잡고 있다.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사회라면 이들에게 부족한 것은 더 센 힘일 뿐이다. 그러므로 자신의힘을 증강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 무리를 짓거나, 도구를 이용하고,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자신을 누구도 감당할 수 없도록 해주겠다고 마음먹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보다 힘이 약한 상대를 만났을 때 힘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약한 또래나 유약한 성인들을 만나면 이들은 바로 가해자의 모습으로 돌변하기도 한다.

학교나 지역사회에서는 단체 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규율과 공중도덕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언제든지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을 경험할 수도 있고, 의사소통의 오해도 벌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학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폭력적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본 경험이 아주 적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예를 들어 '잘못했으면 맞아야 한다'거나 '짜증나게 하면 때린다'는 논리를 고민없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과연 그렇게 해결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란 말이나고 진심으로 묻는다.

물론 이들은 매우 다루기 어려운 아이들이 된다.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이런 아동이 두서넛 있으면 금방 평판이 나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000이가 다니면 다니지 않겠다'고 같은 공간에 있길 꺼리는 상황도 자주 벌어진다. 이들은 매사를 힘의 논리에 의존하려 들어서 교사들이 이들을 다루는데 애를 먹고, 잘 훈련되지 않은 교사들은 이들에 자극받아 폭력으로 상황을 해결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들은 일단 규율을 파괴하는데 힘을 기울이는데 무법천지에서는 그야말로 힘의 논리만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론 매번 이들이 최강자는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동으로 어른들이 '때리지 않고 말로 하겠다는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에 시달리는 듯하다. 이 아동들은 곧 비행 아동들과 관련도 깊어지게 된다. 이들의 행위 자체가 비행과 일탈의 요소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뚜렷한 선이 그어지는 순간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캐릭터를 얻게 되는데, 예를 들면 범생이, 짜질이, 나대는 애, 잘 나가는 애, 일진 등이 그것들이다. 그리고 한 번 일정한 이미지를 얻게 되면 그를 벗어나기가 매우 쉽지 않다. 대도시 등의 지역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익명성이 보장되긴 하지만 학생들의 심리적 사회적 경계가 성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협소한 편이어서 지역사회 안에서도 이런 이미지들은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학생들의 부모들만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학생들은 잘못된 상황이 벌어지고 그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 후회를 하고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게 되지만 그런 변화를 격려하고 이를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 지지자를 만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본인이 변화를 겪는데 있어서 내면의 갈등과 힘겨움도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데 또래들이 변한 자신의 모습을 잘 수용해주지 않거나 부모나 교사 등이 불신의 말을 던지거나 하면 이런 자신의 노력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 금세 의지가 꺾이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가정에서 학대로 시작된 아동폭력의 문제는 학교와 지역사회로 금세 전이된다. 물론 학교와 지역사회 자체에서 발생하는 폭력 문제가 별도로 발생하기도 하고, 가정에서의 아동학대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가정의 아동학대가 학교와 사회의 폭력의 문제에 깊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더욱이 지역의 무례하고 폭력적인 문화는 바로 가정의 보호자들에게 심리적 상처를 입히고 이들은 이런 분노를 가정에 돌아가 어린 아동들에게 바로 폭력으로 풀어내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다는 점도 덧붙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폭력은 마치 민들레 씨앗처럼 제 홀씨를 뿌리고 다니는 것이다.

#### 4 마무리

최근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아동학대보호조치가 강화되면서 일선 현장의 신고의식이 고취되는 등 매우 고무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또 보호자들도 학대 신고를 바로 경찰이 받으면서 아동학대가 범법행위라는 사실을 보다 인식하게 되어 예방적 차원에서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물론 여전히 가정에서 보호자에 의한 학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불어 최근에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및 복지시설 등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종사자들에 의한 폭력 사건도 끊임없이 보고되어, 아동학대가 광범위하게 지행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아동들이 가끔 학교 교사나 가정에서의 차별을 이야기하는 사례가 있는데 경미한 별로 생각하며 아동에게 대한 차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폭력은 과연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첫째 중요한 것은 의식을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이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폭력은 우리 사회에 일종의 지배수단이나 생존 전략으로 매우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이런 폭력을 사회의 일정 부분 혹은 일정한 연령대의 구성원들부터 근절하고자 한다면 사회 전체의 관습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아동에 대한 폭력이 약자에 관련된 사항으로 금지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보장 등이 교직원들은 물론이요 당사자인 학생들의 동의도 모두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 자체가 우리 사회의 수준을 대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권리의 보장은 어떤 측면에서 합의가 아닌 강제가 필요한 사항이라 여겨진다. 왜냐하면 권리의 침해자들은 결코 이에 쉽게 합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권리의 보장은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의 확인만으로 앞으로 이들 권리가 보장되고 존중받아야 할 충분한 근거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의 수준에서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거나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데 따른 단계적 조치를 취할 수는 있겠지만 원칙적 측면에서 권리 유무를 변경할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아동복지법 개정은 찬성하는 측면이 있다.

둘째 관련한 다양한 인프라들이 필요한데 이는 결국 예산의 문제와 맞물리는 문제가 될 것이므로 논의는 할 수 있겠으나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이미 학교 상담사의 배치 및 문제행동조기개입서비스에 대한 바우처 지원 사업,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등과 같이 아동학대 및 학교 폭력 문제와 깊은 연관성을 갖는 분야의 예산 지원이 일시적이거나 불투명한 전망을 갖는 경우가 악히 있어온 터이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나 학교 폭력의 문제를 지원하려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거의 개별적으로 대상자를 만나 장기에 걸쳐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경우가 많은데 현실은 이를 크게 따라와 주질 못한다.

의식의 전환이나 문화를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디어 등을 통한 공익광고의 제작과 보급 등과 같이 사회적 인프라를 일단 활용해보는 것이 고려될 수 있겠다. 교육과정도 하나의 중요한 활용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교육자들 역시 아직은 아동이나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해와 상충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모두가 찬성은 하고 있지 않아 그 활용이 부분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가정이나 학교를 움직이려면 구체적으로 부모나 교사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으며 그런 두려움에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지를 기술적이고 정서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팀체제의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갖추고 가동시키는 경우도 거의 없는 줄 알고 있다. 또한 학교의 성과 기반의 평가 방식은 부적응을 보이거나 집중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경향성을 부채질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관련 제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여성에 대한 역차별을 통해 차별철폐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아동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면 역차별이 이루어져서 국가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거나 아동청소년 기금 등이 마련되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성인지 예산이 편성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결국 이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정치적 세력화와 맞물려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다. 여성이나 이주 노동자, 성소수자들은 아동이나 청소년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약자로 분류되어져오긴 하지만 정치권에서 이들이 받는 대접이 모두 동일하지는 않다. 이들이 사회에서 하는 역할과 정치적 세력으로서의 잠재력에서 모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결국 아동과 청소년들이 정치적 잠재력에서는 당사자를 대변할 수 없는 가장 마지막 세력이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투표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도 논의가 힘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공론화되고 있지 못하다. 하다못해 이런 논의라도 시작하지 않는다면 모든 관련 조치들이 힘이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학교 폭력을 진심으로 예방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조치들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거친 글을 끝맺음하고자 한다.

- 1) 현행의 아동복지법의 개정의 의미를 살려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의 확보를 국가 예산의 일정 비율에서 확보하여 학대와 폭력 예방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라,
- 2) 아동권리 교육을 관련 직종의 종사자와 당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실효성있게 추진하고 공익광고 등을 통해 보편적으로



수행하라,

3) 학부모 및 관련 직종의 종사자들의 문제를 상담해줄 수 있는 관련 인력들을 조직하고 사회적으로 공익변호사 등과 같이 공익 상담사제도 등을 고민해보라.

4) 학교 폭력의 근절을 위해 학생인권선언을 채택하고 이를 실질화할 수 있는 제반 조치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점검기구를 만들라, 교장공모제 등과 같이 학교 운영의 민주적 요소를 강화하고 교장의 권한을 적절히 조절하여 학교 문화가 권위적이지 않게 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5) 학교 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도한 행정적 업무나 성과위주의 평가를 지양하나 폭력을 저지른 교직원에 대한 분명한 제재조치는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6) 유치원 등에서부터 갈등관리나 의사소통 교육을 관련 종사자들이 집중적으로 이수하여 생활 속에서 갈등관리나 의사소통 및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기법을 아동청소년 및 종사자와 부모 모두가 실질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하라.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시행 2014.9.29.] [법률 제12341호, 2014.1.28., 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학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사)의 죄
  -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사),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 파. 기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하.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5.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한다.
6.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7.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하 "보호처분"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9. "아동복지전담기관"이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과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11.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피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8조(형벌과 수감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감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감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감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행(實刑)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③ 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감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감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의 실행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감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행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 실행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감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 1. 아동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 2. 보호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 3. 그 밖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형벌과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감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학대행위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는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의 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의 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그 처리 결과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제3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0.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5.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2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현장출동)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이나 그 소속 직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 3.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②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피해아동을 분리·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아동을 인도받은 보호시설·의료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검사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연장된다.

④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응급조치결과보고서에는 피해사실의 요지,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응급조치를 저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임시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하였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졌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때에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4항에 따라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형사절차"는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제17조(준용) 아동학대범죄의 조사·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 제4장 아동보호사건

제18조(관할) ① 아동보호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 아동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이하 "판사"라 한다)가 한다.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 ③ 판사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임시조치가 청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⑤ 제1항제6호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 ⑥ 제1항제6호에 따라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⑦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 및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⑧ 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 및 교육을 행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은 그 결과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⑨ 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상담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제7항에 따른 통지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임시조치의 고지) 법원은 제1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아동학대행위자의 보조인(제44조에서 준용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제7호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임시조치의 집행) ① 판사는 제1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임시조치의 변경) ① 아동학대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판사는 임시조치를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제19조제5호 및 제6호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 또는 제19조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

로 그 임시조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제23조(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 ① 판사는 제19조제1항제4호의 임시조치로 인하여 피해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 그 임시조치의 기간 동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판사는 해당 피해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피해아동, 변호사 및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그 선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③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해아동, 변호사 또는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아동 소유 재산의 보존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⑤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민법」 제949조를 준용한다.
- ⑥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선임, 사임 및 변경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25조(검사의 결정 전 조사)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동학대행위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의 경력, 생활환경, 양육능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에게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그 인권을 존중하며,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④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 대하여 제1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 결과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등을 참고하여 피해아동 보호와 아동학대행위자의 교화·개선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1.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2.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性行) 및 개선 가능성
4.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5.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제27조(아동보호사건의 처리)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로서 제26조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28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제27조에 따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할 법원(이하 "관할 법원"이라 한다)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제29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제30조(송치 시의 아동학대행위자 처리) ①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부터 관할 법원이 있는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그 밖의 시·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아동학대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와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203조 또는 제205조의 구속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효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 때에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31조(송치서) ①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를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송치서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업, 피해아동과의 관계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 상황을 적고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이송) ① 아동보호사건을 송치 받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적절한 조사·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사건을 즉시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송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첨부하여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보호처분의 효력)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1조제1호에 따라 송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진행한다.

1. 해당 아동보호사건에 대하여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확정된 때

2.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제41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때

③ 공범 중 1명에 대한 제2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그 기관장,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 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③ 피해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아동학대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을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인도할 수 있다.

④ 판사가 제1항제3호의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 보호처분의 기간 동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의 선임 등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⑤ 법원은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상담소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⑦ 제1항제6호의 감호위탁기관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7조(보호처분의 기간)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8조(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①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보건법」을 준용한다.

제39조(보고와 의견 제출 등) ① 법원은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집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아동학대행위자가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처분의 이행 실태에 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보호처분의 변경) ①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1회에 한정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은 2년을,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4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보호처분의 취소)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따라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
2. 제29조에 따라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제42조(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제43조(비용의 부담) ①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시조치 또는 제3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는 위탁 또는 보호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아동학대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② 판사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의 예납(豫納)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가 부담할 비용의 계산, 청구 및 지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준용)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보호처분 및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등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의2,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9조까지, 제42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폭력행위자"는 "아동학대행위자"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가정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본다.

제45조(항고와 재항고) ① 제19조의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36조의 보호처분, 제40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41조의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제44조가 준용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

정이 현저히 부당할 때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임시조치·보호처분의 항고·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본다.

### 제5장 피해아동보호명령

제46조(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아동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②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판사가 제1항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관할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판사가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동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자의 선임 등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보조인) ①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 대하여 각자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6조에 따른 변호사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③ 변호사(「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제49조에서 같다)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이 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판사는 언제든지 제3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피해아동·아동 학대행위자 사이의 신분관계 또는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직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보조인은 독립하여 절차행위를 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해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절차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9조(국선보조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직계친족·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 1.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 2.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호사를 아동학대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50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①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 ②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2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3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2조(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①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임시로 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보호명령"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판사가 제4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임시보호명령을 한 경우 그 임시보호명령의 기간 동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자의 선임 등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 ④ 임시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에 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제53조(이행실태의 조사) ① 관할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관할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에는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54조(병합심리) 법원은 사건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병합하여 심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과 아동보호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제55조(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교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6조(준용) ①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조사·심리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폭력행위자"는 "아동학대행위자"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가정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보호처분"은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본다.

제57조(항고와 재항고) ①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제51조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제50조에 따른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제52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②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위임규정)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6장 벌칙

제59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학대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2.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3.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제52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의 실행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1조(업무수행 등의 방해죄) ①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① 제35조제1항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그 기관장,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보조인인 변호사에 대하여는 「형법」 제317조제1항을 적용한다.

②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35조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판사의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한 소환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입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제64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직원 및 진술조력인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2341호, 2014.1.28.>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관련 조항**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아동복지전담기관"이란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과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



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 일시보호시설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하게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종사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경력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⑧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신원확인 등의 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제8항에 따른 신원확인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또는 검사는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후견인의 선임 및 제2항에 따른 후견인의 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④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21조(보조인의 선임 등) ①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 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원은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아동과 그 보호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1.28.〉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따라야 한다.
- ④ 제3항의 신분조회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4.1.28.〉

제2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위반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 삭제 〈2014.1.28.〉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삭제 <2014.1.28.>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① 사법경찰관리는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27조의3(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피해아동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1.28.]

제28조(사후관리 등)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아동, 그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8.]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④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14.1.28.>

⑥ 제5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4.1.28.>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8.]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1.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제45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8.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9.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11. 「정신보건법」 제3조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13조의2의 정신보건센터
  12.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
  13.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6.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8.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2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② 제1항 각 호(제1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29조의4(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1. 교육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8호·제18호·제19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7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3. 보건복지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호·제7호·제9호·제10호·제11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4. 여성가족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13호·제14호·제15호·제16호·제20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5. 국토교통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2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③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등록·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8.]

#### 제4장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3. 악물의 오남용 예방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8.>

1.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제 구축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 상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6의2. 제28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②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8.>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3.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4.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5.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지원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지원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화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전담기관과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설치목적의 달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6. 아동복지시설의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나 시설의 폐쇄 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1.28.>

1. 제27조의3을 위반하여 피해아동의 인수를 거부한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의 장

2.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관련기관의 장

②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4.1.2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2.10.22, 2014.1.28.>

1. 삭제<2014.1.28.>

2. 제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1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휴업·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9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전담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및 도의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2.10.22, 2014.1.28.>